법제처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 일시	2022. 5. 1.(일) 12:00	배포 일시	2022. 5. 1.(일) 12:00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이기정 (044-200-6511)
		담당자	사무관 진성훈 (044-200-6515)

농지투기 뿌리뽑기!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된다
「농지법」, 5월 18일 시행
-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전자어음 발행 대상 확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함(「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 9. 시행).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함(「농지법」 개정, 5. 18. 시행).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함.

□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관리)**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5. 19. 시행).

○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 행위 5가지**를 규정함.

* ①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② 가족 채용 제한,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⑤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5. 19. 시행).

○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22년 5월 시행법령 목록(2022. 4. 29. 기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5월 9일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전자어음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법무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농지법」(5월 18일 시행)

【개정이유】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농업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농지 취득 및 소유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도 도입 등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하고 있음. 또한 농지가 산업단지, 공공주택단지 등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개발 예정지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여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및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증명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8조제2항, 제64조제1항제1호 신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간을 연장하고,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한 사유를 규정함(제8조제4항 및 제8조의3 신설).

○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함(제37조의3 신설).

○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4조).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5월 19일 시행)

【제정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제5조).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함(제6조).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10조).

○ 공공기관 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제11조).

(소관 부처: 국민권익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5월 19일 시행)

【개정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에서 더 나아가, 해당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부터 제29조의7까지 신설 등).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22년 5월 시행법령 목록 (2022. 4. 29.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04호	기획재정부	5. 1.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03호	기획재정부	5. 1.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06호	산업통상자원부	5. 1.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07호	보건복지부	5. 1.
5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2488호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5. 1.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048호	법원행정처	5. 1.
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22호	국토교통부	5. 1.
8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02호	국토교통부	5. 3.
9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800호	국방부	5. 4.
10	방위사업법	법률	제18805호	국방부,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5. 4.
11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8798호	법무부	5. 4.
1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93호	법무부	5. 9.
1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20호	국토교통부	5. 15.
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00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 18.
15	농지법	법률	제18401호	농림축산식품부	5. 18.
16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해양수산부	5. 18.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제18191호	국민권익위원회	5. 19.
1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78호	고용노동부	5. 19.
19	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8179호	고용노동부	5. 19.
20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8167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 19.
2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8155호	문화재청, 환경부	5. 19.
2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08호	국민권익위원회	5. 19.
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31호	고용노동부	5. 19.
2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33호	공정거래위원회	5. 20.
25	철도안전법	법률	제16638호	국토교통부	5. 27.
26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16호	국토교통부	5. 27.
27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26호	국토교통부	5. 27.
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0호	산업통상자원부	5. 28.
29	국회법	법률	제18192호	국회사무처	5. 30.